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

박 영 모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등록세 면제 여부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주식을 이전 및 교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9조제1항제19호를 적용하여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① 외국법인이 상법상 주식이전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 신설
 - * 주식이전: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국내 자회사들의 주식을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고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
- ② 신설 금융지주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외국법인에 교부하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



본금 등기 경로

- ③ 금융지주회사의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 등기의 등록세 면제 여부가 문제됨 (등록세율 : 자본금의 1000분의 4)



회신내용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9호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동 조문은 삭제된 상태이고, 입법취지상 제38조의2를 오기)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119조제1항제19호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내국 법인의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고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6조제1항에서는 제119조제1항제19호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2009.1.1.)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23조에서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9호 감면요건인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2에 따라 주식을 이전 받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는 잘못된 조문인용(제38조의2 → 제38조)과 인용조문상의 감면주체(내국인)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주식을 이전·교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고 동 개정내용을 2009.1.1. 이후 등기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2009년 중에 주식을 이전·교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35, 2010. 1. 6.】

2. 종교용부동산 비과세 관련 정당한 사유 및 유예기간 적용 요령



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결정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질의1)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에 비과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질의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만료일의 적용 기준



사실관계

- 2006.03.24 : 토지취득



- 2006.09.18 : 건축허가신청(사회복지시설)
- 2006.10.17 : 건축허가 사전예고(주민의견수렴)
- 2007.07.04 : 건축허가신청서 반려
 - 반려사유 : 지역 주민들이 지역정서와 교통혼잡등의 문제 제기로 인한 주민 반발
- 2007.10.05 : 행정심판 청구
- 2008.01.18 : 행정심판 재결서(건축허가신청서반려 처분을 취소)
- 2008.04.16 : 건축허가
- 2009.03.02 : 착공신고 처리통보
- ※ 현장에 울타리 및 현장사무소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나 주변 민원으로 터파기 공사나, 구조물 공사 등의 행위는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음.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1)과 관련하여, 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



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등 참조)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 및 착공에 장애사유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납세자가 그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참조)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추징 유예기간 자체가 연장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추징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취지가 건축공사 준비, 건축공사 추진 등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점과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취소된 이후 직접 사용을 위한 절차인 건축물의 착공 등은 건축허가일로부터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 명백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즉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7632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의 활용이 불가능 했던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추징을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다만 추가로 정당



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과세관청에서 전체 유예기간 중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처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가 가능 했던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135, 2010. 1. 12.】

3.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내용

법인이 상업용 건축물의 취득시기(사용승인일) 이전에 별도의 시공사와 차양막설치 공사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실제공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 계약금액 상당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취득시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건축물 사용승인일 : 2009.07.15
- 차양막 설치공사 계약일 : 2009.1.15
- 차양막 계약내용 : 법인장부(건설가계정)에 공사비용으로 계상
 - 계약금액 : 10억원(부가세별도)
 - 1차기성고(3억원)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 : 2009.08.31
 - 2차기성고(3억원)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 : 2009.10.15
 - 차양막 납품기한 : 2008.7~2009.10
- 추가 공사기간 : 2009.08.01~2009.12.31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관련, 법인이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상업용 건축물의 일부 부대공사인 차양막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이후에 추가공사를 한 경우, 동 공사는 건축물에 부착(창문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 공사로서 그 지급원인이 신축건물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되어 신축건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08, 2010. 1. 15.】

4. 농업협동중앙회 관련 감면 여부



질의내용

건축물 취득 후 1년(과세유예기간)이내에 감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25%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감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건축물 취득 후 과세유예기간(1년)이내에 그 감면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포기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더 이상 당초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감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과세함이 타당합니다.(대판 '05두14035, '06.1.27)

다. 다만, 감면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여부 등 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20, 2010. 1. 18.】

5. 건물시가표준액 감산적용 요령



질의내용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감산 적용 시 벽의 중앙 일부가 빈 공간, 유리창, 환기창인 경우와 건축물 내부에 벽이 없는 경우에 특수구조 건물의 “무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실관계

- 건물유형 : 집합건물
- 구조 및 층수 : 일반철골구조 / 지상 5층
- 층별용도 (건물 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 1 ~ 2층 : 상가
 - 3 ~ 5층 : 주차장
- 3층 ~ 5층 현황
 - 외벽 : 건물의 앞면과 좌, 우면은 상하로 벽이 있고, 그 중간부분은 일부가 유리창, 환기시설창(건축당시는 빈 공간이었다가 이후 설치)으로 되어 있으며, 뒷면은 상하로 벽이 있고 중간부분은 빈 공간임
 - 각층 내부의 구분 : 각 층은 물리적으로는 구획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각 층별로 2개호로 구분되어 있음



회신내용

가. 지방세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시 감산대상인 특수구조 건물에서 “무벽”이란 건물을 감싸는 외벽 1면 이상이 무벽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 귀문의 경우 건물의 둘레를 막는 구조물로서 건축자재로 고정되어 있다면 “무벽면적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운영과-261, 2010. 1. 20.】



6.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여부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1)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의 범위 및 질의2)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방법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는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1)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사



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당초 개인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투여한 현물출자액 이외 현금출자액도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우리 부 지방세운영과-2001, 2008.10.30. 질의회신 참조)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접 투여하지 아니한 다른 주주의 투여지분에 해당하는 출자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국심 2005중2993, 2005.11.1 결정 참조)입니다.

다. 질의2)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 따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344, 2010. 1. 26.】

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여부



질의내용

제조업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100% 인수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고 종전의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이후 사업용 재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 부여하는 취득·등록세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8.05.16 : (주)00 설립
 - 소재 : 경기도 00시 00구
 - 업종 : 가방부품 제조업
 - 대표자 : 000, 주주 : □□□(소유지분 100%)
- 2008.10.24 : (주)00 법인의 주식을 △△△이 100% 양수
 - 대표자를 000에서 △△△으로 변경
- 2009.07.13 : 법인의 본점이전(부산 00구 00동)
- 2009.10.09 : 벤처기업으로 확인
- 2009.12.29 : 사업용 재산 취득(부산 00구 00동 소재)



회신내용

가. 구 「조세제한특례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법인은 주주 또는 대표자와 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과세객체이고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등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



20369 판결 참조)입니다.

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주주 또는 대표자와 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이 기존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아 법인의 창업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100% 인수하고 대표자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고 그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등기한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343, 2010. 1. 26.】

8.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내용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자선·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79.10.04 : 재단법인 설립(민법 제32조)
 - 정관상 목적사업 : 1.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충효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3. 장학사업, 4. 지역사회 의료봉사사업, 5. 지역사회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봉사사업, 6.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양로의료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 단기노인 보호시설운영, 7.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09.11월 : 노인복지시설 신축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세 및 농특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됨
- 2009.12. 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에 따른 재가급여 사업을 수행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제4호에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법령을 종합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기획재정부 재법인-535, '09.6.9. 및 국세청 법인-739, '09.6.26. 참조)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387, 2010. 1. 28.】

